|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뇌물제공 형사사건 처리 구체적**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뇌물제공 형사사건 처리 구체적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 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47차 회의, 2012년 8월 21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1기 검찰위원회 제7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012년 12월 26일    법에 따라 뇌물제공 범죄활동을 징벌하기 위하여, 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뇌물제공 형사사건 처리 시의 구체적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부당 이익을 도무하기 위해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390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조** 뇌물제공으로 부당 이익을 도모하여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90조 1항에서 규정한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뇌물제공 금액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 뇌물제공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이나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3인 이상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② 불법소득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③ 불법 범죄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 약품, 안전생산, 환ㄱ여보호 등 감독관리직책을 감당한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민생을 엄중하게 위해하고 공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침해한 경우  ④ 행정 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의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행정 법 집행과 사법 공정에 영향을 준 경우  (3) 기타 사안이 심각한 상황.  **제3조** 뇌물제공으로 부당이익을 도모하여 빚어낸 직접적 경제손실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390조 1항에서 규정한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 뇌물제공으로 부당이익을 도모하여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90조 1항에서 규정한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뇌물제공 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뇌물제공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미만이나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3인 이상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② 불법소득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③ 불법 범죄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 약품, 안전생산, 환ㄱ여보호 등 감독관리직책을 감당한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민생을 엄중하게 위해하고 공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침해한 경우  ④ 행정 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의 국가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행정 법 집행과 사법 공정에 영향을 준 경우  (3) 빚어낸 직접적 경제손실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4) 기타 사안이 특별히 심각한 상황.  **제5조** 여러 회 뇌물제공을 하였으나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뇌물제공 금액을 누계로 계산하여 처벌한다.  **제6조** 뇌물제공자의 부당이익 도무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뇌물제공 범죄와 함께 수죄 병벌하여야 한다.  **제7조** 뇌물제공자가 추소 전에 스스로 뇌물제공 행위를 자백하여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 적발된 경우에는 뇌물제공자에게 형법 제68조의 입공속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39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위 뇌물제공인 경우 추소 전에 단위에서 집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단위 책임자가 스스로 단위 뇌물제공 행위를 자백한 경우 형법 제39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 및 유관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고 단위 뇌물제공 사항을 직접 처리한 직접 책임인원이 추소 전에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위 뇌물제공 행위를 자백 경우 당해 직접 책임인원에게 형법 제390조 2항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뇌물제공자가 추소를 당한 후 자기의 범죄를 여실하게 공술하는 경우 형법 제6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스스로의 범죄 공술로 인해 특별히 심각한 결과발생을 피면한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뇌물제공자가 뇌물수수인 및 그 뇌물제공과 무관한 기타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거쳐 확인된 경우 형법 제68조의 입공속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뇌물제공 범죄를 행하여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및 형사처분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인 이상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2) 뇌물제공으로 인해 행정적 처벌 또는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법 범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경우  (4) 심각한 위해 결과를 빚어낸 경우  (5) 기타 형사처분 집행유예 또는 면제 상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390조 2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전 항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뇌물제공 범죄로 취득한 부당 재산적 이익은 형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추징, 배상을 명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뇌물제공 범죄로 취득한 재산적 이익 그 밖의 경영자격, 자격 또는 직무승진 등 기타 부당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유관부문에 건의한다.  **제12조** 뇌물제공 범죄 중의 "부당이익 도모"란 뇌물제공자가 취득한 이익이 법률, 법규, 규장, 정책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국가 공직자에게 법률, 법규, 규장, 정책, 업계규범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여 자기에게 협조를 하도록 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것을 가리킨다.  공정, 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경제, 조직인사관리 등 활동에서 경정 우위를 도모한 경우에는 "부당이익 모도"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형법 제390조 2항에서 규정한 "추소 전"이란 검찰기관에서 뇌물제공자의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을 하기 전을 가리킨다. |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  **关于办理行贿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行贿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12年5月1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47次会议、2012年8月21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十一届检察委员会第7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3年1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2012年12月26日      　 为依法惩治行贿犯罪活动，根据刑法有关规定，现就办理行贿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 为谋取不正当利益，向国家工作人员行贿，数额在一万元以上的，应当依照刑法第三百九十条的规定追究刑事责任。  **第二条** 因行贿谋取不正当利益，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刑法第三百九十条第一款规定的“情节严重”：  　　（一）行贿数额在二十万元以上不满一百万元的；  　　（二）行贿数额在十万元以上不满二十万元，并具有下列情形之一的：  　　1.向三人以上行贿的；  　　2.将违法所得用于行贿的；  　　3.为实施违法犯罪活动，向负有食品、药品、安全生产、环境保护等监督管理职责的国家工作人员行贿，严重危害民生、侵犯公众生命财产安全的；  　　4.向行政执法机关、司法机关的国家工作人员行贿，影响行政执法和司法公正的；  　　（三）其他情节严重的情形。  **第三条** 因行贿谋取不正当利益，造成直接经济损失数额在一百万元以上的，应当认定为刑法第三百九十条第一款规定的“使国家利益遭受重大损失”。  **第四条** 因行贿谋取不正当利益，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为刑法第三百九十条第一款规定的“情节特别严重”：  　　（一）行贿数额在一百万元以上的；  　　（二）行贿数额在五十万元以上不满一百万元，并具有下列情形之一的：  　　1.向三人以上行贿的；  　　2.将违法所得用于行贿的；  　　3.为实施违法犯罪活动，向负有食品、药品、安全生产、环境保护等监督管理职责的国家工作人员行贿，严重危害民生、侵犯公众生命财产安全的；  　　4.向行政执法机关、司法机关的国家工作人员行贿，影响行政执法和司法公正的；  　　（三）造成直接经济损失数额在五百万元以上的；  　　（四）其他情节特别严重的情形。  **第五条** 多次行贿未经处理的，按照累计行贿数额处罚。  **第六条** 行贿人谋取不正当利益的行为构成犯罪的，应当与行贿犯罪实行数罪并罚。  **第七条** 因行贿人在被追诉前主动交待行贿行为而破获相关受贿案件的，对行贿人不适用刑法第六十八条关于立功的规定，依照刑法第三百九十条第二款的规定，可以减轻或者免除处罚。  　　单位行贿的，在被追诉前，单位集体决定或者单位负责人决定主动交待单位行贿行为的，依照刑法第三百九十条第二款的规定，对单位及相关责任人员可以减轻处罚或者免除处罚；受委托直接办理单位行贿事项的直接责任人员在被追诉前主动交待自己知道的单位行贿行为的，对该直接责任人员可以依照刑法第三百九十条第二款的规定减轻处罚或者免除处罚。  **第八条** 行贿人被追诉后如实供述自己罪行的，依照刑法第六十七条第三款的规定，可以从轻处罚；因其如实供述自己罪行，避免特别严重后果发生的，可以减轻处罚。  **第九条** 行贿人揭发受贿人与其行贿无关的其他犯罪行为，查证属实的，依照刑法第六十八条关于立功的规定，可以从轻、减轻或者免除处罚。  **第十条** 实施行贿犯罪，具有下列情形之一的，一般不适用缓刑和免予刑事处罚：  　　（一）向三人以上行贿的；  　　（二）因行贿受过行政处罚或者刑事处罚的；  　　（三）为实施违法犯罪活动而行贿的；  　　（四）造成严重危害后果的；  　　（五）其他不适用缓刑和免予刑事处罚的情形。  　　具有刑法第三百九十条第二款规定的情形的，不受前款规定的限制。  **第十一条** 行贿犯罪取得的不正当财产性利益应当依照刑法第六十四条的规定予以追缴、责令退赔或者返还被害人。  　　因行贿犯罪取得财产性利益以外的经营资格、资质或者职务晋升等其他不正当利益，建议有关部门依照相关规定予以处理。  **第十二条** 行贿犯罪中的“谋取不正当利益”，是指行贿人谋取的利益违反法律、法规、规章、政策规定，或者要求国家工作人员违反法律、法规、规章、政策、行业规范的规定，为自己提供帮助或者方便条件。  　　违背公平、公正原则，在经济、组织人事管理等活动中，谋取竞争优势的，应当认定为“谋取不正当利益”。  **第十三条** 刑法第三百九十条第二款规定的“被追诉前”，是指检察机关对行贿人的行贿行为刑事立案前。 |